

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9. 6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8. 18. 복진경의원 대표발의(8명 발의)

나. 상정의결
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9. 6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복진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의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자 휴일 최소 운영시간을 조정하고, 인접한 의료기관 간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접한 의료기관 간 연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, 휴일 최소운영 시간을 조정함(안 제4조)
- 조문의 주어를 문맥에 맞게 통일함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
-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8. 25.(5일간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당초 단일 의료기관이 운영하던 것을 서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협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휴일 최소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.
- 현행 조례는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일부개정안은 제4조와 제6조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4조(지정 및 지원)제2항은 현행 단일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을 탄력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상호 협의가 가능할 경우, 연합하여 동일 행정동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신설한 것이며,
 - 현행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, 후단을 신설하여 야간 및 휴일 운영 시간중 휴일 운영시간을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던 것을 오후 1시까지로 조정하고 이후의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. 현행 제3항은 조문 내 조항 정비로 제4항으로 변경한 것임
 - 이 조례상의 야간 및 휴일 운영시간을 최소 운영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, 이를 굳이 제2조(정의)에 반영함 없이 해당조문 제4조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반영한 것임.
- 안 제6조(관리)는 현행 조례의 조문 내 문장표현이 다소 어색하여 간단·명료하게 조문의 내용을 정비한 것임.
-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휴일 진료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단축 진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,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, 최소 운영시간 이후 의료기

관 상호협약에 의한 자율 운영시간 결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. 끝

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복진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18.

발 의 자:

복진경·이동호·노애자·이도희·김광심·

김민경·박다미·오온누리 의원(이상8인)

1. 제안이유

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의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자 휴일 최소 운영시간을 조정하고, 인접한 의료기관 간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인접한 의료기관 간 연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, 휴일 최소 운영시간을 조정함(제4조)

나. 조문의 주어를 문맥에 맞게 통일함(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일차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제3항(중전의 제2항)제2호 중 “6시”를 “1시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”을 “소아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”으로, “있고, 야간·휴일의원이”를 “있고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결과,”를 “결과, 소아”로, “경우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의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경우 야간·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
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
할 수 있다.

경우 -----

-----.